

「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7월 1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 및 군민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7. 11. ~ 2023. 7. 16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.
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·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불용의약품”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2. “폐의약품”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고흥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, 수거, 운반,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(이하 “불용의약품 등”이라 한다)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군민의 책무) ① 군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흥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재 약국, 보건소,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고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,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.

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,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.

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·조정 역할을 하고,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
④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,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,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·단체에 대하여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